

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2021·3·22 조례 제1687호
일부개정 2024·9·30 조례 제2134호
(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
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이란 이천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3조(책무)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 및 환수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노력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4조(조사 및 연구)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, 보존·관리실태, 반출경위, 관련 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천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5조(조사단 구성 및 활동)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(이하 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4·9·30>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단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1. 문화유산위원, 문화유산 관련학과 교수 또는 향토사학자
2. 이천시의회 시의원
3. 언론인 또는 관계전문가

4.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

③ 조사단의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, 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④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1. 역사사료,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·분석

2.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 판정

3. 보호 및 환수 등과 관련된 활동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⑤ 시장은 조사단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6조(환수 후 관리) 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에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 <개정 2024·9·30>

② 시장은 환수한 문화유산의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기도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받거나 향토유물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24·9·30>

제7조(지원·육성)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문화유산 활용·교육·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,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4·9·30>

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협조체계 구축)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,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 <개정 2024·9·30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9·30 조례 제2134호,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
조례의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